

## 業 務

本協會는 1973年 2月 6日 公布된 法律 第2482號 「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」에 依하여 設立되었으며, 設立目的은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·啓蒙을 通하여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는 데에 있습니다.

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本協會의 主要業務를 紹介하면 :

- ①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加入에 따르는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
- ②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의 消火設備에 따르는 料率割引等級의 査定
- ③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調査, 研究 및 啓蒙
- ④ 行政機關 其他 關係機關에의 火災豫防에 關한 建議
- ⑤ 消火器機의 寄贈
- ⑥ 消火設備改良資金의 貸與
- ⑦ 消火器機製造工場의 設立, 運營 또는 消火器機製造工場에의 資金貸與
- ⑧ 其他 財務部長官의 承認 또는 指示를 받은 事項